

보험금 청구서 (추가청구용)

* 본 청구서는 추가청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건인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가청구란? 이미 접수하셨던 사고(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청구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인적 사항 및 보상 안내받으실 분

청구번호		보상담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청구사유					
보상관련 안내처	보험금 수령인	성명		휴대폰	-
	안내방법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한 가지는 선택(안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팩스, 주소 중 선택 사항 기재: _____)			

2. 함께 보내는 서류

서류종류	매수	서류종류	매수

3. 보험금 수령 계좌

* 기지급 받은 계좌로 지급 요망 기지급 받은 계좌번호로 지급을 원할 시에 V표시 하세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확인 사항

- 본인은 별지 1.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를 안내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2.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을 말합니다.

작성일 : 20 년 월 일

피보험자(성명) : _____ (서명)
 법정대리인(성명) : _____ (서명)
 보험수익자(성명) : _____ (서명)

5. 보내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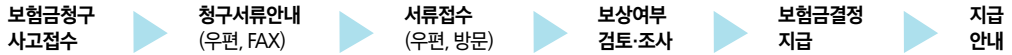
성명	연락처
회사작성란	접수경로 <input type="checkbox"/> 본인방문 <input type="checkbox"/> 모집자방문 <input type="checkbox"/> 부(), 모()방문 <input type="checkbox"/> 기타접수()
접수일	

※ 보험사기(과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감독규정 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 상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검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

-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www.samsungfire.com)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권 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소보운영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 전화상담 : 1588-5114 (질병 및 상해 사고접수 /ARS 착신 후 5번을 누르십시오.)
- 우편 : (우066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B동 삼성화재 3층 소보운영파트

예상 지급기일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10영업일 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당사 콜센터(TEL 1588-51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

-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걱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료', '선택진료이외' 항목의 비용
- 진료비 확인방법 :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요청, 모바일 앱, 우편 / FAX요청, 방문상담 요청으로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2000)